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2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김도읍・구자근・강승규

김희정 • 조지연 • 이성권

주진우 · 김석기 · 윤재옥

윤한홍 · 김기현 · 신동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이 같은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 1년이내에 치료만 하고 있고 예방 사업으로는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고 있어 중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약・약물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 중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 고자 함(안 제2조의3, 안 제51조의3 신설, 안 제41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를 각각 "마약류 관리와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마약류관리의"를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전단 중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을 "기본계획, 시행계획 또는관리계획을"로 하고,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를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관리계획의"로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및 생활 지원을 위하여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3부터 제51조의7까지를 각각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8까지로 하고,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3(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 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
 - 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해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3부터 제51조의8까지를 각각 제51조의4부터 제51조의9까지로 하고,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 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
- 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해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제2조의3(마약류관리기본계획)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1.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및 추진방향 2. 마약류관리에 관한 추진계획 2.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및 추진방법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3. 마약류관리에 관한 관계 기 3. 마약류 관리와 오남용 예방 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및 마약류 중독자 관리에----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마약류관리의 체계 4. -----마약류 관리와 오남 적 ·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 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관 요한 사항 리의-----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 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 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원을 위하여 마약류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사례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
<u>다.</u>
<u>⑥</u>
<u>기본계획, 시행계</u>
획 또는 관리계획을
· ⑦기본계획, 시행
계획 및 관리계획의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3(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식품의약품안
·
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
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
<u>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u>

저사저이 시히보긔 민 새화 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
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
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업

- 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 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류 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 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 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 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u>제51조의3</u>(마약퇴치의 날) (생략)

<u>제51조의4</u>(실태조사) (생 략)

<u>제51조의5(마약류</u> 명예지도원) (생 략)

<u>제51조의6</u>(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 설립) (생 략)

<u>제51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u> 의제)(생 략)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u>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51 곳이4(미야티키이 나) (청초

제51조의4(마약퇴치의 날) (현행 제51조의3과 같음)

<u>제51조의5(실</u>태조사) (현행 제51 조의4와 같음)

<u>제51조의6(마약류</u> 명예지도원) (현행 제51조의5와 같음)

제51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 설립) (현행 제51조의6과 같 음)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51조의7과 같음)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3(마약류 중독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 ①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사 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 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 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 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한 보호・교육・상담 및 홍보 사 업

2.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일 상생활 유지 및 보호를 위하 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류 중독자의 체계적·효율적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 (이하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 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원활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51조의 2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 항에 따른 마약류중독자관리시 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제51조의4(마약퇴치의</u> 날) (현행 제51조의3과 같음)

<u>제51조의5</u>(실태조사) (현행 제51 조의4와 같음)

<u>제51조의6(마약류</u> 명예지도원)

<u>제51조의3</u>(마약퇴치의 날) (생략)

<u>제51조의4(</u>실태조사) (생 략)

<u>제51조의5</u>(마약류 명예지도원)

(생 략)

제51조의6(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 설립) (생략)

행태조사) (생략)

제51조의8(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략)

(현행 제51조의5와 같음)

제51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 설립) (현행 제51조의6과 같 음)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제51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현행 제51조의7과 같음)

> 제51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현행 제51조의8과 같음)